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37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납부유예 규정 신설 (최은석의원안)	2

I. 개요

1. 최은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237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8. 26.

(3) 회 부 일 : 2025. 8. 27.

나. 제안이유

「종합부동산세법」은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납부유예 규정 신설 (최은석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u>납부유예 규정 신설(제9조의2)</u> ○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의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 ○ (시행일) 공포한 날

* 최은석의원안 2025. 8. 26. 발의(의안번호 제12375호)

☐ 개정안은 해당 세법에 따라 본세가 납부유예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법」에 명시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9조, 제12조¹⁾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하며,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

- 1)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신고·납부 등 <개정 2010.12.30.>)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제9호에 따른 연결모법인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12.31., 2018.12.24.>
- ③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④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증권거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징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② 본세가 해당 세법에 따른 분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그 본세를 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따른다.

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본세 환급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²⁾는 나이, 주택 보유기간, 소득 수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는 별도의 납부유예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³⁾

따라서, 과세체계의 정합성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본세 납부유예 시, 농어촌특별세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2)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납부유예) ①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의 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제10조의2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한다)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 양식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음